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

<목 차>

1.운항승인의 요건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작 성 자	이름	노소영
	담당부서 (과)	해운물류국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이시원		연락처	044-200-6201
	과장	송준석		이메일	in19035011@ma il.go.kr

2024. 07. 17.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운항승인의 요건 신설								
	2.규제조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16조								
	3.위임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2~2024.08.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자율운항선박의 국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시범운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24.1)하였으며, 시행('25.1)에 앞서 하위법령 제때마련 중 ○법률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운항해역 범위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득해야하며, 바다에서의 안전한 실증을 위해 구체적인 승인 신청 요건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필요								
	7.규제내용	○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하려는 자에 대한 운항 승인의 신청 요건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자율운항선박 실증 기관 및 업체 (연구기관, 산업계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자율운항선박 실증 연구기관 및 업체</td><td>약 5개 기관 및 3개 주요 업체 등</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율운항선박 실증 연구기관 및 업체	약 5개 기관 및 3개 주요 업체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율운항선박 실증 연구기관 및 업체	약 5개 기관 및 3개 주요 업체 등								
9.규제목표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실증 및 시범운항을 지원하여 국내 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해당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조(운항의 승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여부 2. 시범운항 및 실증 상세 계획(최저승무원원 및 직무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증서 5.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약속서 7.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 및 결과 8.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의 감항성

현 행	개 정 안
	(堪航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항의 승인 여부 및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결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자율운항선박의 국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시범운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24.1)하였으며, 시행('25.1)에 앞서 하위법령 제때마련 중
- 법률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운항해역 범위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득해야하며, 바다에서의 안전한 실증을 위해 구체적인 승인 신청 요건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단일안으로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실증 및 시범운항을 지원하여 국내 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규제의 목적은 운항해역에서 시범운항을 하려는자가 해수부장관에게 운항 승인을 요청할 시 필요한 안전성 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 해상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박유무, 안전성평가 등의 필요 선결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하고자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수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동 규제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자율운항선박은 아직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시범운항하려는 주요 주체가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주요 조선사(3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중에 있으므로 대상이 한정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등에는 영향이 적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 해상에서 선박 시범운항을 위한 승인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에 미적용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범운항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것이 필요
유연한 분류 체계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에 미적용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범운항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것이 필요
네거티브 리스트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에 미적용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범운항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것이 필요
사후 평가관리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에 미적용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범운항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것이 필요
규제 샌드박스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에 미적용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범운항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것이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자율운항선박 관련 IMO로 부터 선박 설계 기준, 안전성, 책임 소재, 자율운항선박 승인 및 심사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 전반적인 규정을 담은 국제협약 MASS code(자율운항선박 코드)가 논의 중인 상황임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IMO MASS code	일치	

○ 타법사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경우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5조 등에서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도 타법(선박안전법 등)으로 특례를 받아 자율운항선박을 실증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은 모두 만족(선박유무, 안전성평가, 선박검사증서 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동 규제의 조건은 해상에서 안전하게 실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임
- 자율운항선박법으로 운항승인을 받고자하는 자에게 상기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법제화하는 것이 동 규제의 목적이므로, 추가적인 조건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규제자가 동 규제에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도 타법(선박안전법 등)에서는 동 규제의 대부분 조건을 모두 만족(선박유무, 안전성평가, 선박검사증서 등) 하는지를 판단하여 자율운항선박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 규제의 목적은 실증하고자하는 자가 신청시 만족해야하는 조건을 나열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부담은 적음
- 또한, 운항 신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검사, 위험도평가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기관(한국선급, KOMSA)의 사전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는 시범운항 및 실증을 하고자하는 자가 운항승인 신청 시 만족해야하는 조건을 나열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별도 재정 소요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관계부서 및 기관, 업체 등이 참여한 협의, 간담회 등(1.18, 3.28)을 통해 법령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실증 및 시범운항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자율운항선박 정책에 반영

3. 종합결론

-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법으로 자율운항선박을 실증 및 시범운항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승인 조건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해상에서의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 원활한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필요성에 비추어 불태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